

#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81,229,859	26,436,896
일반회계	766,735,672	23,002,070
특별회계	114,494,187	3,434,826
공기업특별회계	98,447,050	2,953,41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786,130	923,58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4,164,532	1,324,93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3,496,388	704,892
기타특별회계	16,047,137	481,414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0,000	300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781,256	23,438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69,565	44,087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3,582,178	107,465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18,092	99,543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737,599	82,128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4,148,447	124,453

제 2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6년도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6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201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394,79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6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

제 9 조 (간주처리)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